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046,344,334	31,390,330
일반회계	1,013,071,428	30,392,143
특별회계	33,272,906	998,187
기타특별회계	33,272,906	998,187
상수도	31,046,872	931,406
의료급여기금	1,498,500	44,955
자활기금	517,566	15,527
주민소득지원기금	120,218	3,607
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	89,750	2,69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83,44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6,475,76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